

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6. 5. 20.>

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(제7조 관련)

1. 농산물(임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- 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농산물 중 등급이 상(上) 이상인 농산물. 다만,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이어야 한다.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
- 다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
- 라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
- 마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중 농산물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무농약농산물
- 바. 그 밖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

2. 축산물

- 가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축산물
- 다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중 축산물 및 「축산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
- 라. 그 밖에 시·도지사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

3. 수산물

- 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수산물 중 등급이 상(上) 이상인 수산물. 다만,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

이상이어야 한다.
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
- 다.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수산물
- 라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
- 마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70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에서 처리된 수산물
- 바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중 수산물,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
- 사. 그 밖에 시·도지사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

4. 가공식품 및 기타

- 가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
- 나.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
- 다.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식품
- 라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된 축산물가공품
- 마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수산가공품
- 바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중 유기가공식품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
- 사. 그 밖에 시·도지사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